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80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한지아·조지연·강승규

김승수 · 정성국 · 김형동

진종오 · 김예지 · 고동진

백종헌 · 서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됨.

실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는 1만 6,170명으로 10세~12세를 합친 수인 7,684명보다 11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흥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초등·중학교의 학 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 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맞춤형 보호 처분 마련, 소년보호절차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범죄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소년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안 제4조제1항제2호, 제32조제3항)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이에 맞추어 13세 이상의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안 제1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년 또는 보호자 등이 법원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다. 통고 처분 개선(안 제20조제3항 신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년부가 보호사건 심리 개시 결정을 하는 때에 통고 내용등을 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소년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석권 보장 규정 신설(안 제24조제3항

신설)

피해자 등의 심리참석 신청이 있는 경우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마. 보호사건 재판에서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구한 검사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바.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신설(안 제30조의3 신설)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 일시 · 장소, 심리결과 등을 피해자 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사.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안 제32조제1항 단서규정 신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1호부터 4호까지의 보호처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5호부터 10호까지의 과도한 보호 처분은 못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
- 아.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5호) 병합(안 제32 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9호 또는 10호의 소년원 송치 처분에 5호의 보호관찰 처분을 병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자.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거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차.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안 제43조, 제47조의2 신설)

보호처분·부가처분 결정 및 변경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법원이 보호처분 등 결정 시 검사에게 통지 및 소년보호사건 종결 시 사건기록 등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카. 검사의 소년사건 처분 시 전문가 의견 조회 규정 신설(안 제49조 의4 신설)

수사기관이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타.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 소년부 송치 결정 도입(안 제50조제2항부 터 제5항까지 신설)

형사법원에서 소년범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 시 보호처분 위반을 조건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함.

파.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안 제67조의2제2항 신설)

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요

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안 제67조의3 신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소년법에 명시하고, 그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및 지원할 수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거.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안 제70조제1항)

소년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43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14세"를 "13세"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⑦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제4조 제1항 제1호의 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심리의일시·장소, 심리 개시 사유 요지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고된 제4조 제1항제1호의 소년에 대하여도 같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변호인 · 배우자 · 직

계친족·형제자매(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심리의 참석을 신청하는 경우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방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를 "대리인등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보호 처분의 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①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여부, 심리의 일시·장소, 심리결과, 임시조치 등 감호에 관한 사실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가 소년의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제5호부터 제10

호까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32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 중 "14세"를 "13세"로 한다.

- 6. 제1항제5호·제9호 처분
- 7. 제1항제5호·제10호 처분

제3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조치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나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서의 치료·재활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제32조의2제1항"을 "제32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을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및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 또는 제38조의 보호처분의 취소 결정"으로,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을 "검사,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③ 소년부 판사가 제29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47조의2 및 제4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7조의2(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등)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 분의 결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및 제37조의 보호 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 또는 제38조의 보호처분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소년보호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 제49조의4(전문가의 의견 조회) 수사기관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년 또는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등을 확인하 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부과하여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 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1. 소년부 판사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보호처분을 잘 이행할 것
- 2. 소년부 판사가 제32조의2에 따라 명하는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 가처분을 잘 이행할 것
-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정하는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것
- 4. 범죄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제35조에서 정하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 위탁받은 자나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소년비행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의2에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7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①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 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단체에 청소년비행예방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 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 보호처분의 집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소년의 나이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2호,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고) ①		
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2		
를 한 10세 이상 <u>14세</u> 미만인	<u>13세</u>		
소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임시조치) ① ~ ⑤ (생	제18조(임시조치)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	<u>⑥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u>		
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u>있다.</u>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u><신 설></u>	⑦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또		
	는 제6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		
	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①・②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소년부 판사는 제4조 제1항		

제24조(심리의 방식) ①·② (생략)

<신 설>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 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 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

제1호의 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 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심리의 일시·장소, 심리 개시 사유 요지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고된 제4조 제1항 제1호의 소 년에 대하여도 같다.

제24조(심리의 방식)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 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심리의 참석을 신청하는 경우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방해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참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① ----- 대리

<u> 인등이</u> -----

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 ② 검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를 받아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관한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①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여부, 심리의 일시·장소, 심리결과, 임시조치 등 감호에 관한 사실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가 소년의 건전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 전 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 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 10. (생략)
-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 합할 수 있다.
- 1. ~ 5. (생략)

<신 설>

<신 설>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u>14세</u>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 ⑥ (생 략)
-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저 부가처분 등) ① (생 략) <신 설>

<u>된나.</u>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u>다만, 제4조제1항제3</u>
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
<u>을 할 수 없다.</u>
1. ~ 10.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항제5호·제9호 처분
7. 제1항제5호·제10호 처분
③ <u>13세</u>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
ㅎ이 처부으 하 때에느 6개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아동복

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②·③ (생 략)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제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 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

에서의 보호조치 또는 「청소년
보호법」제34조의2의 청소년 전
문 치료기관이나 제35조의 청소
년 보호·재활센터에서의 치료·
재활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37조(처분의 변경) ①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및 제 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 경 결정 또는 제38조의 보호처 분의 취소 결정---- 검사,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 1.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소년부 판사가 제29조에 따 라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 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 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7조의2(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u>송부 등) ① 제32</u>조에 따른 보 호처분의 결정, 제32조의2에 따 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및 제37 조의 보호처분 · 부가처분 변경 결정 또는 제38조의 보호처분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년보호사건이 종결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 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49조의4(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50조(법원의 송치) (생략)

<신 설>

<신 설>

수사기관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 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년 또는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건강의 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 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50조(법원의 송치) <u>①</u>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 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 을 부과하여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가 제32조제1항
 에 따라 결정하는 보호처분을
 잘 이행할 것
- 2. 소년부 판사가 제32조의2에
 따라 명하는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잘 이행할
 것
-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
 제32조에 정하는 준수사

 항을 잘 이행할 것
- 4. 범죄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

<신 설>

<신 설>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생략)

<신 설>

<신 설>

은 소년부 판사는 제19조제1항 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 제29 조제1항에 따른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반으로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제35조에서 정하는 위탁반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사건 본인과 보호자, 위탁받은 자나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 일려야 한다.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u>①</u>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소년비행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신 설>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 제70조(조회 응답) ① -----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 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u>수사</u> 또 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 호처분의 집행 -----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야 한다.

제67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①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 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비 행예방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청소년비행예 방센터의 설치 • 운영을 그 업무 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 • 단체에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비행예 방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 정한다.

----- <u>수사, 보</u>

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